







( 새로운 의무이해 수단의 차이점 )

	배출권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거래방식	국가간 배출권 거래	프로젝트에서 나온 배출감축 단위를 이전하거나 취득하는 거래	Non-Annex I 국가의 프로젝트에서 나온 공인배출 감축의 취득
단 위	할당된 배출량의 일부분	배출감축단위 (Emission Reduction Credit)	공인배출감축 (CER :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참 여 자	Annex I 국가	Annex I 국가 및 당사국 합의에 의한 적법한 기관	Annex I 국가는 구매자로 Non-Annex I 국가는 판매자로 참여 민간이나 공공기관도 참여 가능
의정서상 명시된 요구사항	배출권의 국가간 거래는 국내의 배출저감 노력에 대한 보조적 성격이지 주된 이행수단은 아님	ERC는 관련 당사자 간에 승인되어야 하고 협약상의 보고의무를 준수하는 나라에 의해서만 취득되어야 함 국내조치에 대한 보조적 성격	당사국회의의 '권위와 지시'에 따라 배출감축은 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운영주체에 의해 공인되어야 함. 당사국회의는 공인된 사업과실의 일부만이 행정비용을 커버해야 하며, 협약이행이나 수용에 특별히 취약한 개도국을 우선 도와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함
당사국회의 추가과제	당사국회의는 증빙, 보고, 회계적 측정 등에 관한 사항 등 적절한 원칙과 방법론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정하여야 함	당사국회의는 증빙과 보고에 대한 이 조항의 이행을 위한 지침을 더 연구해야 함	당사국회의는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와 증빙을 통하여 투명성, 효율성, 회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과 절차를 개발하고 2000년부터 시작되는 조기시작 조항의 의미를 확립해야 함.

둘째, 흡수원(Sink)의 포함여부이다. 미국, 캐나다 등 해외조림사업에 많이 진출해 있는 나라는 개도국의 조림사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CO2 저감분을 인정받으려 하나 EU는 일단 흡수원을 거래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입장이다.

셋째, 공인배출감축(CER)의 거래한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국내의 배출저감노력이 우선이고 해외에서의 CER 획득은 보조적 수단이 되어야 하나, 미국은 제도전체

